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57
------	------

2023. 0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해당 사업은 소극장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삼일로창고극장 ('58년 준공)의 역사성 및 시설을 보전하고, 서울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가(연극인)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기획력, 행정력, 기술력, 예술현장 이해, 네트워킹 등 고도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서, 청년예술인 지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중구 삼일대로9길 12
- 규 모 : 대지면적 352.1㎡, 연면적 408.87㎡, 지상 2개동
- 소 유 자 : 오○○ 등(민간 소유 건물 임차)
- 개 관 일 : '18. 6. 22.
- 주요시설 : 공연장(50석), 스튜디오(연습실), 사무실, 매표소 등
- 사업내용 : 연극단체 대관 공연 및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체 기획사업 운영

다.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 1. ~ 2026. 12.)
- 위탁사무
 - 삼일로창고극장의 공연장 및 부속동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서울시가 요구

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4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¹⁾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2020.12.16.)를 받은 바 있으며, 재위탁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1)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삼일로창고극장 현황

- 삼일로창고극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시 소재 소극장(1975년 개관) 중 하나로 2017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경영난으로 인해 수 차례 폐관되었다가 재개관하기를 반복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시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10년간의 장기 임차('17.6.16.~'27.6.15.) 계약을 체결하였음.

《 삼일로창고극장 현황 》



□ 시설개요

- 위치: 중구 삼일대로9길 12
- 건립일자: 1958.8.10.
- 개관일자: 2018.6.22.
- 규모: 대지 352.1㎡, 연면적 .408.87㎡
- 시설현황: 공연장(50석), 스튜디오(연습실), 사무실, 매표소 등

- 서울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이 민간분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산예술센터²⁾와 삼일로창고극장을 통합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수의 위탁·운영하고 있음.('17.5.~'23.12.)
- 서울문화재단이 동 시설 운영을 맡은 이후 '창작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연극제'와 같은 창작활동 사업을 필두로, 공연장 및 스튜디오 대관 서비스, 공동운영단 운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음.

2)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2020.12.31.폐관)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실적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운영단	회의 횟수	34회	40회	23회	23회	40회
기획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건수	8건	6건	7건	4건	4건
	프로그램 운영횟수	71회	67회	29회	185회	33회
	참여 예술가 수	188명	377명	126명	77명	48명
	관람객 수	5,323명	1,412명	2,379명	510명	219명
대관운영 (공연장)	대관건수	10건	17건	11건	16건	13건
	대관일수	75일	116일	77일	110일	145일
	관람객 수	2,005명	2,839명	1,363명	1,514명	2,099명
	객석점유율	84.2%	81.1%	76.8%	79.7%	75.4%
대관운영 (스튜디오)	대관건수	9건	31건	13건	70건	63건
	대관타임(3타임/일)	105타임	313타임	195타임	643타임	440타임

- 다만, 삼일로창고극장은 개관 이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건물주의 결정에 의존하는 임대차 계약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어 왔고, 해당 시설이 임대차 계약 만료(2027.6.15.) 이후 현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최초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17) 》

□ 검토내용(문제점 및 대안)

- ① (건물 수선 없이) 원형을 보전하여 운영하는 대안 제시
- ② 극장주에게 운영지원하는 대안 제시
- ③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복원 운영하는 대안 제시
- ④ 건물 수선 및 확장으로 인한 임대료 폭등(월300만→월1,303만) 지적
- ⑤ 10년 장기계약의 필요성 지적
- ⑥ 다수(4인)의 건물주로 인한 계약상의 불편함 초래 지적
- ⑦ 계약만료 후 건물주의 결정에 따른 시설 유지 불확실성 지적
- ⑧ 시설 매입 대안 제시

- 한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³⁾는 총점 76.35점으로, 민관협력체제 운영,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다만, 7년 전인 2016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한 극장 시설이 원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시설 유지보수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대두됨.
- 따라서, 현재의 인력 구성인(행정/기획 1명, 무대·조명·음향 각 1명)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인력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삼일로창고극장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
위탁유형	시설형
위탁범위	- 삼일로창고극장의 공연장 및 부속동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소요예산(안)	1,065백만원(민간위탁금 797백만원, 사무관리비 268백만원(임대료))

3) 2017년~2020년에는 삼일로창고극장과 남산예술센터가 통합 평가되었으며, 2020년부로 남산 예술센터가 폐관되면서 2021년부터 삼일로창고극장이 독자적으로 평가되었음.

- 서울시의 민간위탁 심의의뢰서상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은 공연업계에 관한 고도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판단됨.

< 재위탁 시 주요 사업계획 >

○ 기획사업 운영
- 창작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진입단계 창작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창작 기획, 무대기술 등 창작자 니즈를 고려한 실효성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청년예술인 창작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극장 대표브랜드 사업 추진 · 24시간 연극제 :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 작품창작 및 쇼케이스 발표 · 창고개방 : 삼일로창고극장을 예술인 및 시민과 공유하는 개방 프로그램
-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극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 : 예술현장과의 소통 및 공론의 장 마련 · 포럼, 수다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예술현장 및 극장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 대관 운영
- 공연장 대관 : 연 2회 정기대관 공모 (상/하반기)
- 스튜디오 대관 : 수시대관(매월 초 공고) 선착순 승인
- 대관 운영 제도 개선

-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개모집이 원칙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 민간위탁 추진경과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	'17.5. ~'17.12.31.	(재)서울문화재단	신규위탁(수의)
2	'18.1.1.~'20.12.31.	(재)서울문화재단	재계약
3	'21.1.1.~'23.12.31.	(재)서울문화재단	신규위탁(수의)

- 이는 서울문화재단이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기반을 다진 후, 2024년부터 완전한 민간이양을 시행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설소유주와의 임대계약(2017.6.16.~2027.6.15.) 기간 동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1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예산 세부내역(안) (사업시작연도)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134,400	- 직원(행정/기획,무대,음향,조명 담당) 급여 : 2,800,000원×4명×12월=134,400,000원
	제수당	21,600	- 시간외근무수당 : 20,000원×13시간×12월×4명=12,480,000원 - 연차수당 : 100,000원×6일×4명=2,400,000원 - 가족수당 : 60,000원×12월×4명=2,880,000원 - 특수업무수당 : 80,000원×12월×4명=3,840,000원
	평가급	22,400	- 평가급(기관성과급) : 2,800,000원×4명×200%=22,400,000원
소 계		178,400	
운영비	일반수용비	42,000	- 사무용품 : 2,000,000원×1식=2,000,000원 - 복사용지 및 토너: 2,000,000원×1식=2,000,000원 - 운영 물품 구입(미화, 시설 등) : 1,500,000원×4분기=6,000,000원 - 무대/음향/조명 관련 물품 구입 :1,000,000원×4분기=4,000,000원 - 소프트웨어 구입 : 2,000,000원×1식=2,000,000원 - 전문스태프 : 26,000,000원×1명=26,000,000원
	임차료	8,400	- 사무기기 : 200,000원×12월=2,400,000원 - 공기청정기/정수기/비데 : 500,000원×12월=6,000,000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	40,000	- 각종 회의/자문/평가/심사 수당 : 200천원×5명×40회=40,000,000원
	회의비	3,000	- 5천원×15명×40회=3,000,000원
	공공운영비	33,000	- 공공요금(전기, 수도, 통신 등) : 2,500,000원×12월=30,000,000원 - 책임보험료 : 3,000,000원×1식= 3,000,000원
	수선유지비	20,000	- 시설 유지보수 : 10,000,000원×1식= 10,0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10,000,000원×1식= 10,000,000원
	시설비	10,000	- 시설 보수 및 공사 : 10,000,000원×1식= 10,000,000원
	교육훈련비	2,000	- 직원교육훈련비 : 500,000×4명=2,000,000원
	관서업무비	1,840	- 정원가산업무비(동호회 지원, 체육행사 등) 160,000×4명=640,000원 - 부서운영비 : 100,000×12월=1,200,000원

항목	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12,760	- 특근매식비 : 8,000원×4명×10일×12월=3,840,000원 - 복리후생비 : 8,920,000원 · 명절선물 : 60,000원×2회×4명=480,000원 · 휴양소운영 : 180,000원×2회×4명=1,440,000원 · 선택적복지비 : 1,500,000원×4회=6,000,000원 · 건강검진비 : 250,000원×4명=1,000,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9,864	- 국민연금 : 178,400,000원×4.5%=8,028,000원 - 건강보험 : 178,400,000원×3.55%=6,333,200원 - 장기요양 : 6,333,200원×12.81%=811,280원 - 고용보험 : 178,400,000원×1.8%=3,211,200원 - 산재보험 : 178,400,000원×0.83%=1,480,720원
	퇴직급여 적립	20,000	- 퇴직급여 적립 5,000,000원×4명=20,000,000원
	기타근로자보수	6,600	- 기타 임시직(극장 작업크루 및 일용근로자) : 150,000원×4명×11회=6,600,000원
	여비	4,800	- 시내출장비 : 100,000원×4명×12월=4,800,000원
	자산취득비	4,000	- 장비 및 사무기기 : 4,000,000원×1식=4,000,000원
	위탁관리비	220,800	- 경비/미화관리용역비 : 4,250,000원×4명×12월=204,000,000원 - 안전 관련 대행 용역 (전기, 소방, 보안, 소독 등) : 1,400,000원×12월=16,800,000원
소 계		449,064	-
사업비	행사운영비	160,000	-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40,000,000원×4식=160,000,000원
	기타보상금	10,000	- 기획공모사업 선정단체 시상금 : 2,500,000원×4단체=10,000,000원
소 계		170,000	
합 계(백원 이하 절사)			797,464,000원

붙임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삼일로창고극장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	3년	적정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57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해당 사업은 소극장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삼일로창고극장('58년 준공)의 역사성 및 시설을 보전하고, 서울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청년예술가(연극인)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나. 기획력, 행정력, 기술력, 예술현장 이해, 네트워킹 등 고도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서, 청년예술인 지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 나.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중구 삼일대로9길 12
 - 규모 : 대지면적 352.1㎡, 연면적 408.87㎡, 지상 2개동
 - 소유자 : 오○○ 등(민간 소유 건물 임차)

- 개 관 일 : '18. 6. 22.
- 주요시설 : 공연장(50석), 스튜디오(연습실), 사무실, 매표소 등
- 사업내용 : 연극단체 대관 공연 및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체 기획사업 운영

다.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 1. ~ 2026. 12.)
- 위탁사무
 - 삼일로창고극장의 공연장 및 부속동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4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김수연 (☎2133-2579)